

제278회(임시회) 제4차본회의
2009년 3월 27일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소 방 위 원 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3. 27.
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년 3월 6일

장주식 의원 외 6인
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3월 11일

3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
제278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(2009. 3. 23)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주식 의원)

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의 삭제로 폐지하려는 것임.

III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)

이 폐지 조례안은 제정 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(2008.12.31) 삭제와 1995년 위원회 구성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협의회운영 조례를 폐지에 이견이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조례 제306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